

<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급여제공범위)

-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이다.
-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 2인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본 기관은 이동용 욕조를 이용한 차량 미이용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요양요원 2인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 이용자 가정의 상황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하여 가정내 욕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제4조 (급여외 행위의 제공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항에 따른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갑'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2. '갑'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3. 그 밖에 '갑'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② 장기요양요원의 금지업무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 급여 외 행위		
행위	급여종류	세부내용
‘갑’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방문요양	1) 이용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청소 2)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3)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방문간호	1) 이용자의 가족만을 위한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 2) 가족을 위한 신체훈련, 관절구축예방운동
‘갑’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공 통	1)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2)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갑’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방문요양	1)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2) 잔디 깎기, 덧발 매기 등
	방문간호	1) 의사의 처방 및 지시 없이 요구하는 수액, 영양제 주사 2) 신체 훈련 및 관절구축예방운동 목적 외 서비스시간 중 마사지, 안마만을 요구하는 경우

제5조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방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② ‘갑’의 방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③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 이용요일을 변경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일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일정 변경시에도 해당서비스요원 또는 ‘을’은 ‘갑’ 또는 ‘병’에게 미리 알리고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변경하도록 한다.
- ④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 ⑤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⑥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 ⑦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⑩ 심야 .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 ⑪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

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6조 (계약자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갑’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갑’이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3. ‘갑’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갑’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 비납부확인서의 요청 6.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의 요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갑’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갑’의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3. ‘갑’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할 의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급여외 행위의 제공금지 준수 6. 직원의 인권보호 준수 7.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 ‘을’의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문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④ ‘갑’(또는 ‘병’)은 다음의 사항과 같은 **직원의 인권보호**내용을 준수한다.

1. ‘갑’(또는 ‘병’)은 서비스제공직원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따라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가. ‘갑’(또는 ‘병’)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 폭행 · 상해 또는 성희롱 · 성폭력** 행위의 경우

-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함
-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함
- 성희롱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적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도 해당함
-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제7조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 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7. '갑'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갑'(또는 '병')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 및 안전의 위협을 가할 경우
 9. 이용료를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서로간의 신뢰관계에 해를 끼칠 경우
 10. 급여외 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11. 직원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8조 (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 '병')은 제7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유선, 대면 상담 등으로 '을'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다.
- ② '을'은 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갑'(또는 '병')에게 통보하고 해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납부)

- ① 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당해년도「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갑'이 실제 이용한 일수와 '갑'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 및 비급여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익월 1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 ④ '을'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링크주소를 발송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통보한다.
- ⑤ '갑'은 매월 이용료를 기관명의로 계좌번호로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⑥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매월 기록 관리한다.

제10조 (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③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변경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약식「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① 계약기간 중에「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해 급여종류별 방문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 ② 계약기간 중에 계약횟수 변동, 본인부담요율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약한 내용과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제12조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방문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5조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 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4. '갑'(또는 '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7조 (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기관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